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 연수가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장기로서 경쟁 없는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방식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별표로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